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나408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나408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가단508170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이선영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광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가단5081700 판결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및 B(이하 각각 'A', 'B'라고만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8,600,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은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8. 9. 12. 접수 제450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 및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선해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1. A과 사이에 보증금액 76,500,000원, 보증기한 2021. 4. 9.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2018. 4. 25. 보증금액 85,500,000원, 보증기한 2023. 4. 24.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A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B는 원고가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A은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0,000,000원을,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A은 2018. 12. 26. F은행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고, 2019. 1. 15. E은행에 대한 원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각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3. 20. E 은행에 44,964,260원을, F은행에 86,338,27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이후 A에 대한 일부 보증료 반환채무금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에 상계충당하였고, 현재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 잔액은 이 사건 제1보증약정 상 구상금 44,421,720원, 이 사건 제2보증약정상 구상금 84,178,523원 등 합계 128,600,243원이다.

마. 원고와 A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구상금 상환일 전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대위변제일인 2019. 3. 20. 이후 연 10%이다.

바. 한편 B는 2018. 9. 11. 피고 D과 사이에, B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7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중 80,000,000원은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며, 나머지 대금 70,000,000원은 2018. 9. 12.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B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8. 9. 12. 접수 제45048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의 대표자인 B는 A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의 아들 G을 내세워 A과 기업의 형태 ·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C를 설립하였는바, 이는 회사제도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7, 14~21, 23~26, 28,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은 B를 대표자로 하고 귀금속, 지은, 지금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2012. 6. 1.경 개업하였다가 2018. 9. 30. 폐업하였고, 피고 C는 B의 아들 G(1995년생)을 대표자로, M(1994년생)을 감사로 하고, 역시 귀금속, 지은, 지금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2018. 9. 27.경 회사를 설립하고 2018. 10. 8. 개업하였다가 2020. 9. 11. 폐업하였다.

② A은 2012년경부터 도로에 접한 점포인 서울 종로구 L 지상 H빌딩(이하 'H빌딩'이라 한다) I호 15.8㎡를 임차하여 영업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8. 9. 4.경 H빌딩 I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③ 2018. 9. 5. A 명의 계좌에서 20,184,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 결과 위 계좌 잔액은 605원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④ V은 2018. 9. 4. H빌딩 I호를 임대차기간을 2018. 9. 4.부터 2019. 9. 3.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 1. 31.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받아갔다.

⑤ B는 2018. 8. 20. 구속된 후 2018. 9. 6.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352호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B의 동생인 W 명의의 계좌로부터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X 명의의 계좌로 2018. 8. 23. 5,000,000원, 2018. 9. 20. 5,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⑥ 피고 C는 2018. 10. 1. Y로부터 H빌딩 중 내측에 위치한 점포인 K호 22.5㎡를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 1. 28. H빌딩 I호를 임대차기간 2019.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그 과정에서 H빌딩 I호는 K호로, K호는 I호로 서로 호실 번호를 바꾸었는데, 아래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의 번호대로 지칭하기로 한다).

⑦ G은 2018. 9. 11. 친척인 Z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로써 G 명의 계좌의 잔액은 2,215,282원에서 32,215,282원으로 늘어났으며, 그 후 달리 입금된 돈이 없는 상태에서 2018. 9. 18. Y에게 1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G은 2018. 9. 20. 모친의 친구인 AA으로부터 위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G은 2020. 3. 5. Z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여 돌려주었다.

⑧ 2018. 9. 20. 기준 피고 C의 자본금은 30,000,000원, 지분 비율은 AA, G 각 50%로 되어 있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 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폐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A과 피고 C가 모두 귀금속, 지은, 지금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A 폐업을 전후하여 A 대표자의 아들이 불과 24세 정도의 나이로 피고 C를 설립하고 개업하였으며, A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다음 날 같은 금액 이상의 돈이 회사 계좌에서 인출됨으로써 계좌 잔액이 거의 남지 않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A과 피고 C가 영업형태가 같고 두 회사의 대표자가 가족관계인 점, 피고 C가 A 폐업에 연이어 개업한 점 등에서는 기업의 형태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살펴본 사실만으로는 A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동일한 피고 C를 설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① A이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이 2018. 9. 5. 현금으로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돈이 피고 C의 대표자인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기재 계좌들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볼 때 피고 C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G이 Z으로부터 대여받아 마련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② B가 위와 같이 구속된 시점과 A 계좌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이 인출된 시점이 근접한 점, 위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위 시점 전후로 B의 동생이 B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이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이 B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③ H빌딩 K호 및 I호의 임대차 관련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는 A의 당초 영업소로서 도로에 면한 점포인 H빌딩 I호에서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H빌딩 내측에 위치한 K호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위 I호가 공실이 되자 그곳으로 옮겨 영업을 계속하게 된 것이어서, A과 피고 C가 영업장소적 측면에서 동일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A으로부터 피고 C로 유용된 자산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 ⑤ A이 폐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 대출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폐업 무렵 경영상황이나 자산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표자 B가 폐업하기 약 40일 전 구속되는 등 이미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겼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A의 폐업 전 상황만으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⑥ G은 AA으로부터 15,000,000원을 투자받아 피고 C의 공동주주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A과 피고 C의 주주 구성도 상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

(1) 피보전채권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9. 11.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제1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A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9. 30. 폐업하고 2018. 12. 26.부터 채무 변제를 연체하는 등 사해행위 당시부터 이미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인 위 연대보증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원고가 2019. 3. 20. 대위변제를 하여 연대보증금채권이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연대보증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록 매각한 부동산이 채무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 또는 은닉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집행행위에 나아가기가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산감소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매각의 결과 채무자에게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었다면 그 부동산이 시가 상당의 적정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갑 제7~9호증,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강복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당시 가액 170,000,000원), 강원도 평창군 N 전 1,464㎡(당시 가액 36,000,000원), O 300cc 오토바이 1대(당시 가액 3,000,000원)가 있었던 사실, ② 소극재산은 E은행에 대한 별개의 채무 79,564,328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금 채무 44,421,72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결과 B의 적극재산은 실질적으로 39,000,000원밖에 남지 않게 되어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2) 나아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B는 위와 같은 행위가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켜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3) 피고 D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D은 자기앞수표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AB, 기업은행, P은행, F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B가 피고 D로부터 계약금조로 2018. 9. 11. 20,000,000원을, 잔금조로 2018. 9. 12.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각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D 명의의 AB은행 계좌에서 2018. 9. 12. 70,000,000원이 자기앞수표(10,000,000원권 7매)로 인출된 사실, ③ 위와 같이 인출된 자기앞수표가 2018. 9. 12.부터 2018. 11. 20. 사이에 B가 아닌 5인에 의해 각각 지급제시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영수증 기재 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위 자기앞수표 또한 B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D이 B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2)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인 19,714,484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공평의 관점에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가액배상 액수에서 위 변제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일부만 변제되어 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는 그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써 그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미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들어 가액배상 금액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원상회복은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B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B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주문에서 나머지 청구 기각을 하지 않았고 이유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명백한 오류로 보이나, 위와 같이 피고 C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므로 위 오류를 경정하지는 않는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관한 부분은 당심 판단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D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윤웅기 판사 신재환

〈별지〉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R, S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T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63.92㎡

2층 163.92㎡

3층 163.92㎡

4층 163.92㎡

지층 173.08㎡

옥층 13.5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U호

철근콘크리트조

76.4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S 대 51㎡

1. 서울특별시 강북구 R 대 217㎡

대지권의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비율 : 1. 268분의 33.61

끝.